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2271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위길복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이 2021. 3. 1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1) C은 2014. 1. 3. 주식회사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주식회사 D은 2015. 12.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91718), 위 법원은 2016. 9. 28. ‘C은 원고에게 4,741,289원과 그 중 2,889,683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또 다른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0가소322459), 위 법원은 2020. 11. 18. ‘C은 원고에게 29,737,494원과 그 중 3,962,296원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F생)는 피고(1945년생)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셋(G, H, C)을 두었다.

다. E는 1977. 12. 13.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그 후 1991. 12. 28.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며,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E는 2021. 3. 9. 사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1.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이 사건 대지의 소송물가액은 54,608,750원 정도이고, 이 사건 건물은 단층 주택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 E와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게 계속 거주해 왔고, E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하다. E가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아들 C은 2012년경 이미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합계 8,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한편 E가 사망한 후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협의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와 C이 이 사건 협의를 함에 있어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피고가 알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하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사건 협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즉,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E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1),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처럼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생존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C 등 아들 3명은 모두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E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2) E의 사망 및 이에 대한 C의 인식 시점, C의 당시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의 당시 C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피고가 C의 재산 상태나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C이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C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던 위 사정은 피고가 C의 재산 상태나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3)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자녀들은 상속을 사실상 포기하고 생존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더라도 그 경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중 한 명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사리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4) E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2012. 8. 또는 2012. 9.경 합계 8,000만 원이 이체 또는 출금된 내역이 있다. C은 그 무렵 광주시 J 소재 투룸 건물을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을1, 2 참조). E와 피고는 2012년경 이처럼 C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증여하면서 위 돈으로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미리 다 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경위를 참작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방창현

별지

1) 장남 G이 I생이므로(갑11 참조), E의 사망 전까지 피고와 E는 최소한 58년의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